



루썬트 공중 라이선스 버전 1.02

다음은 루썬트 라이선스 템플릿이다. 당신의 독자적인 라이선스를 생성하고 싶다면, 여기에 제시된 본래의 소유자, 기관 및 연도 부분을 당신의 것으로 대체하면 된다.

<기관:> = Lucent Technologies Inc.

<소유자> = LUCENT

<연도> = 2003

라이선스 템플릿:

동봉된 프로그램은 본 공중 라이선스("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다. 프로그램을 사용, 복제 및 배포하는 모든 행위는 수취인이 본 계약서를 승낙했다는 의미를 구성한다.

제1조. 정의

"기여(물)" 이란:

- a. <기관:>("<소유자>")의 경우, 원본 프로그램, 그리고
- b. 각 기여자의 경우,
 - i.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 사항
 - ii.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사항;

을 의미하며, 여기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그러한 변경사항 및 추가사항은 해당 기여자 본인이나 해당 기여자를 대리하는 사람에 의해 프로그램에 추가되며, 기여자는 제 3 조 c 항에 따라 변경사항이나 추가사항을 기여로 간주하는데 명시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기여자"란 <소유자> 및 프로그램에 기여물을 기여한 기타 모든 주체를 의미한다.

"배포자"란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물 또는 그 일부를 배포하는 수취인을 의미한다.

"라이선스 된 특허"란 기여물의 단독적인 또는 프로그램과 결합된 형태의 사용이나 판매에 의해 필연적으로 침해되는, 기여자에 의해 라이선스가 가능한 특허 청구항을 의미한다.

"원본 프로그램"이란 본 계약서와 동봉된, <소유자>에 의해 릴리즈 된 소프트웨어의 원본 버전을 의미한다. 소스 코드와 오브젝트 코드 및 문서가 있는 경우, 이들도 원본 프로그램에 포함된다.

"프로그램"이란 원본 프로그램과 기여물 또는 그 일부를 의미한다.

"수취인"란 모든 기여자를 포함하여, 본 계약서에 의해 프로그램을 양도받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제2조. 권리의 부여

a. 본 계약서의 조건에 구속되어, 각 기여자는 그 기여자의 기여물이나 파생물을 소스 코드와 오브젝트 코드의 형식으로 복제, 파생 저작물 작성 전시, 공연, 배포 및 서브라이선스 설정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전세계에서 사용료 없이 사용이 가능한 저작권 라이선스를 수취인에게 부여한다.

b. 본 계약서의 규정에 구속되어, 각 기여자는 해당 기여자의 기여물을 소스 코드나 오브젝트 코드의 형식으로 제조, 사용, 판매, 판매를 위한 청약, 수입 및 기타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는, 전세계에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특허 라이선스를 라이선스 된 특허에 의해 수취인에게 부여한다. 만약, 기여자가 기여물을 추가한 시점에 그러한 기여물의 추가로 인해 그 결과로 생성된 결합물이 라이선스 된 특허에 의해 적용을 받는다면, 기여자에 의해 부여된 특허 라이선스는 해당 기여자의 기여물과 프로그램의 결합물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기여자에 의해 부여된 특허 라이선스는 (i) 기여물을 포함하는 여타의 결합물이나 (ii) 다른 기여자의 기여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어떤 하드웨어도 그 자체로서 이 문서에 의해 라이선스가 설정되지 않는다.

c. 수취인은 각 기여자가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그의 기여물에 대해 라이선스를 부여한다고 해도, 프로그램이 특허나 다른 주체의 기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각 기여자는 지식재산권 등의 침해를 근거로 다른 주체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 대해 수취인에 대한 책임을 부인한다. 이에 따라 부여된 권리와 라이선스를 행사하는 조건으로서 각 수취인은 필요한 그 밖의 지식재산권을 보장할 전적인 책임을 지닌다. 예를 들면, 수취인이 프로그램을 배포하기 위해 어떤 제3자 특허 라이선스가 요구된다면, 프로그램을 배포하기 전에

그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것은 수취인의 책임이다.

d. 각 기여자는 자신이 아는 한, 자신의 기여물에 대해 본 계약서에 제시된 저작권 라이선스를 부여할 충분한 저작권 권리를 지녔음을 선언한다.

제3조. 요구사항

A. 배포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전제 하에서 본 계약서나 자신의 독자적인 라이선스 계약서에 따라 프로그램을 어떤 형태로든 임의대로 배포할 수 있다:

1. 본 계약서의 규정과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2. 프로그램이 소스 코드나 기타 유형(有形)의 형식으로 배포된 경우, 본 계약서나 배포자의 독자적인 라이선스 계약서의 사본이 프로그램의 각 복제본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3. 배포자의 독자적인 라이선스 계약서에 의해 배포된 경우, 그 라이선스 계약서는:
 - a. 모든 기여자를 대신하여, 소유권, 비침해, 상품성 및 특정 목적 적합성에 대한
목적적 보증을 포함하는 명시적이거나 목적적인 모든 보증과 조건을 효과적으로
부인하고;
 - b. 모든 기여자를 대신하여 이익 손실과 같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손해,
특수하거나 우발적이거나 결과적 손해를 포함하는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효과적으로 면제시켜야 하며;
 - c. 본 계약서와 상이한 조항은 다른 당사자가 아닌 해당 기여자에 의해 단독으로
제공된다고 진술해야 한다.

B. 각 배포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프로그램 내에 눈에 띠는 위치에 포함시켜야 한다:

저작권(C) <연도>, <기관명> 및 기타. 모든 권리를 보유함.

C. 또한, 각 기여자는 후속 기여자가 기여물의 창작자를 적절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자신이 기여물에 대한 창작자임을 밝히고, 자신의 추가물이나 변경물이 기여물로 간주되는 데 동의해야 한다. 일단 동의를 한 이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다.

제4조. 상업적 배포

소프트웨어의 상업적 배포자는 최종 사용자, 사업 파트너 등에 대하여 특정한 책임을 수용할 수 있다. 본 라이선스는 프로그램의 상업적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상업적 제품에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는 배포자는 이로 인해 다른 기여자들에 대한 잠재적인 책임이 발생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어떤 배포자가 프로그램을 어떤 상업적 제품의 제공에 포함시키는 경우, 해당 배포자("상업적 배포자")는 제 3 자가 다른 모든 기여자("면책 기여자")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 소송 및 기타 법적인 조치로부터 발생한 모든 손실과 손해 및 비용(총괄하여 손실)에 대하여, 프로그램을 상업적 제품의 제공으로 배포한 것과 관련된 상업적 배포자의 행위나 태만으로 인한 정도까지, 다른 모든 기여자("면책 기여자")를 방어하고 면책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이 조항에 있는 의무들은 실제 또는 주장된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청구 또는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면책을 받기 위하여 기여자는: a) 상업적 배포자에게 그러한 청구에 대해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지해야 하며, b) 방어를 비롯한 관련 회해 협상에 있어서 상업적 배포자가 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상업적 배포자와 협력해야 한다. 면책 기여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러한 청구에 참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배포자가 프로그램을 Product X라는 상업적 제품에 포함시킨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배포자는 상업적 배포자가 된다. 해당 상업적 배포자가 이행 청구를 하거나 Product X에 관련된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 그러한 이행 청구 및 보증은 그러한 상업적 배포자의 단독적인 책임이다. 이 조항 하에서 상업적 배포자는 그러한 이행 청구 및 보증에 관련되어 다른 기여자를 상대로 발생한 청구를 방어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법원이 다른 기여자에게 손해에 대하여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업적 배포자가 그 손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제5조. 무보증

이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설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프로그램은 소유권, 비침해, 상품성, 특정 목적 적합성에 대한 보증을 포함한 어떤 형태의 보증이나 조건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제공된다. 각 수취인은 프로그램의 사용과 배포에 대한 적합성을 결정하는 전적인 책임을 지니며, 본 계약서가 부여하는 권한들의 행사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여기에는 프로그램 오류 및 적용 법률의 준수, 데이터나 프로그램 혹은 장비의 손상 및 손실, 운영 불능 및 중지로 인한 위험 및 비용이 포함되나 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제6조. 책임의 부인

손해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본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수취인이나 기여자 중 어느 누구도 프로그램의 사용이나 배포, 혹은 여기에서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손해, 우발적이거나 특수한 손해, 결과적 손해 및

정별적 손해(이익손실을 제한 없이 포함)에 대해, 발생 원인이나 책임론, 무과실 책임 또는 (과실 등을 포함한) 불법 행위, 계약 등에 관계없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7조. 수입 통제

수취인은 수취인이 단독으로 미국 수출 관리 규정(및 기타 다른 국가의 수출 통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할 책임을 진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제8조. 일반 사항

이 계약서의 어떤 조항이 적용 가능한 법률 하에서 유효하지 않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더라도, 그것이 이 계약서의 나머지 조항의 유효성이나 집행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며, 이에 따른 당사자들에 의한 추가적인 조치가 없는 한, 해당 조항을 유효하고 이행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로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수취인이 어떤 기여자를 상대로 소프트웨어에 적용 가능한 특허와 관련하여 소송(교차 청구 및 반소 포함)을 제기하는 경우, 그 기여자에 의해 본 계약서에 따라 해당 수취인에게 부여된 모든 특허 라이선스는 그러한 소송이 제기된 날을 기준으로 종료된다. 또한, 수취인이 어떤 주체에 대하여 프로그램 자체(프로그램과 다른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외의 결합물은 제외)가 해당 수취인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특허 소송(소송상의 교차청구 및 반소 포함)을 제기하는 경우에, 제 2 조(b)항에 따라 부여된 해당 수취인의 권리는 그 소송이 제기되는 날에 종료된다.

이 계약서에 따른 수취인의 모든 권리는 수취인이 이 계약서의 조항과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고 그러한 위반事實을 인지한 이후에도 적절한 기한 내에 그러한 잘못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 종료된다. 이 계약서에 따른 수취인의 모든 권리가 종료되는 경우에, 수취인은 합리적으로 보았을 때 가능한 한 신속하게 프로그램의 사용과 배포를 중단하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이 계약서에 따른 수취인의 의무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수취인이 부여한 라이선스는 지속되고 존속되어야 한다.

루센트는 때때로 신규 버전(개정 버전 포함)을 공표할 수 있다. 각각의 신규 버전은 버전 넘버로 구분된다. 프로그램(기여물 포함)은 항상 그것이 양도된 시점의 계약서 버전에 따라 배포될 수 있다. 또한, 계약서의 신규버전이 공표된 이후에는 기여자가 선택적으로 신규버전에 따라 프로그램(기여물 포함)을 배포할 수 있다. LUCENT를 제외한 누구도 본 계약서를 수정할 권리가 없다. 위의 제 2 조 (a)항 및 (b)항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취인은 명시적이거나 목시적으로, 혹은 금반언이나 기타 방법으로 이 계약서에 따른 기여자의 지식재산에 대한 어떤

권리나 라이선스도 인수하지 않는다. 이 계약서에 따라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프로그램 내의 모든 권리는 유보된다.

이 계약서는 뉴욕주의 법률과 미국 지식재산권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계약서에 대한 어떤 당사자도 소송의 원인이 발생한 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 계약서에 따른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각 당사자는 결과적으로 발생한 소송에서 배심재판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